

(주)아이에스시(ISC) 기업지배구조헌장

전 문

주식회사 아이에스시(이하 "회사"라 함)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어 궁극적으로 최고의 반도체 'Total Test Solution Provider'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첩경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 보장,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감사인의 독립적 운영 등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여 주주, 고객,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노력한다.

I. 주 주

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회사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권리와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합병, 자본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 하에 결정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법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③ 회사는 거래 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 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 ②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II. 이 사 회

1.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관련법령,정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의 구성

-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다만,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3.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되며,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회의의 경과 과정, 중요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사의 자격

- ① 이사는 최고의 정직성, 건전한 윤리의식과 직업관을 가져야 하며, 회사, 회사의 전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
-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경영진과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5.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② 사내이사 후보는 회사의 집행임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추천한다.
- ④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다.

6. 이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회사의 핵심가치 추구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 ②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얻어진 정보와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범, 규정을 준수한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이사는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 자신의 개인적, 영업적, 직업적 이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심의나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7.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8. 이사의 교육

- ① 회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 경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 ② 회사의 전향의 교육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Ⅲ. 감사 기 구

1. 감사인의 선임과 임기

- ① 회사는 1인 이상으로 감사인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인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감사 선임 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 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합산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 등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 및 제4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 답변한다.

3.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 보고한다.

IV. 이해관계자

1. 회사는 임직원,고객,협력사,채권자,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성실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3.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V. 공 시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2.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2022년 5월 2일